

□ 무역 및 관세제도

1) 무역 제도

- 말레이시아의 무역정책은 제조업체의 상품 수출시장 확대, 무역상대국과의 거래 증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의 다변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내 지역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투자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대체로 말레이시아는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보장하고 있으나 몇몇 부문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임. 한편, 이스라엘과의 무역은 제약이 많음.
-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물품에 대해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로부터 특혜일반시스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적용을 받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혜택또는 면세의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1997년 말레이시아의 소득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동 혜택 부여를 철회함.

□ 수입관리제도

- 말레이시아는 안전보장, 환경보호, 저작권 보호 등의 이유로 수입 면허나 금지품목지정 등의 제도를 수립하였으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동 수입관리수단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면허 발급의 기준이 모호하여 수출업자들의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
- 닭, 돼지, 우유, 계란 등의 품목에서는 위생허가가 지속적으로 거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임. 이처럼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규제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는

품목에는 시멘트, 전화케이블, 주요 식품, 광물 등이 있음.

- 수입이 규제되어 있는 품목은 다음의 4가지 경우로 나뉨.

- .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14개 품목
- .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및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쌀, 설탕, 계란, 자기테이프, 화약, 목재, 안전모, 다이아몬드, 일부 무기류, 일부 통신장비, 무기류, 게임기계 등
- .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우유, 커피, 일부 전선과 케이블, 일부 철 제품 등
- . 특정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
 - 동물, 동물 제품, 식물, 식물 제품, 담배, 방탄조끼, 전기장비, 안전벨트, 모조무기 등

□ 수출관리제도

- 말레이시아는 몇몇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선 일시적인 수출금지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음. 수출규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 수출 전면 금지
 - 산호, 거북이알, 등나무, 특정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등
- . 보건, 위생, 환경, 안보,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수출허가를 요하는 44개 품목
 - 동물, 동물 제품, 어류, 유제품, 고무, 야자유 제품, 파인애플, 채소류, 쌀, 코코아, 광물, 금속폐기물, 목재, 합판, 폐지, 군사장비, 벽돌, 설탕 등
- . 야생동식물 보호, 보건, 안보, 유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야 수출되는 19개 품목

2) 관세제도

- 말레이시아의 관세부와 대상품목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평균 관세율은 8~9%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량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현재 평균 수입관세율은 이미 10% 미만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현재 약 5,0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낮춰지거나 폐지된 상태임. 무역촉진을 위해 수출을 위한 생산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 현재 여러 품목의 관세율 인하는 계속되고 있음.
- ASEAN 회원 국가들은 AFTA의 공동실효특혜관세안(CEPT)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해 0~5% 범위로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며, 2003년 기준으로 역내 국가들 간 평균 관세율은 2.7% 수준에 이르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현재 97%의 품목에 대해 CEPT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수출세는 정부세입 확보, 환경 보호 및 동국내 시장에서의 적정 공급 물량 유지를 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대체로 5~10%에 달함. 2003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41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율을 인하하고, 208개 품목에 대해선 수출세를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3) 자유지대(Free Zones)

- 자유지대는 주로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업체를 위하여 특별히 조성된 지역으로, 수출지향 업체들에게 제조공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설비에 대한 통관절차의 간소화(완제품 수출 포함) 및 수입관세 면제를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유지대는 무역활동 수행을 위한 자유상업지대(Free Commercial Zones, FCZ), 제조활동을 위한 자유산업지대(Free Industrial Zones, FIZ)로 나뉘며, 혜택은 양자가 비슷함.
- 2005년 4월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서부 해안을 따라 13개의 FIZ와 8개의 FCZ가 있음.
- 한편, 정부는 공업의 지방분산화를 촉진하고 자유지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공장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s)의 설립을 허용해 왔음. 이 경우 FZs 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과 유사한 편익을 누리게 되면서도 입지 선정은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